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6차 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 추가 등〉

■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0820호)

2024. 9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성 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정성호 의원 등 11인
2. 제 출 일 : 2024. 6. 21.
3. 회 부 일 : 2024. 6. 2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,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.

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.

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, 제5조제1항, 제10조제1항 및 제17조).

Ⅲ. 검토의견

<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 추가 등>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”이란 법원, 법무부, 검찰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, <u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/u>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 3. ~ 6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국방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 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)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, 공소장, 영장,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·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, 검찰청, 경찰청,	제5조(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u>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/u>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,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 제10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, 법원행정처 차장, 대검찰청 차장검사, 경찰청 차장, <u>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</u>으로 구성한다. ② (생략) 제17조(위임규정)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, 검찰청, 경찰청, <u>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/u>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	<u>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0조(협의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해양경찰청 차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7조(위임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</u>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-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법원, 법무부, 검찰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정하고 있고, 법무부 차관, 법원행정처 차장, 대검찰청 차장검사, 경찰청 차장 및 해양

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.

개정안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.

- 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인·군무원이 범한 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는데, 최근 「군사법원법」이 개정되어 군인 등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직접 사건을 관할하게 되었음¹⁾. 이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,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검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하여야²⁾ 하고, 군사법원은 관할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³⁾ 하는 등, 군사법원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사건의 연계적 처리가 빈번해진 상황임.

1) 「**군사법원법**」 제2조(신분적 재판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. 다만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**군형법**」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죄

2. 「**군형법**」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

3. 「**군형법**」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

2) 「**군사법원법**」 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 수사)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.

3) 「**군사법원법**」 제2조(신분적 재판권) ③ 군사법원은 공소(公訴)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(移送)한다.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.

- 하지만 현재 군사법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자료를 송부할 때,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처리가 아니라 인편으로 수사자료를 송부하는 등 업무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. 이에 국방부는 군사법원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‘군사법정보 시스템(참고자료)’ 개발에 착수하였고, 동 시스템은 2026년 2월 개통되어 타 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될 예정임.
-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은 형사사법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⁴⁾ 및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⁵⁾을 규정한 근거법에 해당하는바, 동법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한편,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는 각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관 기관으로 구성하여⁶⁾,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,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·조정하는 기구⁷⁾이므로, 개정안과 같이 군사법정보

4)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3조(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)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5)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6조(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)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6)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10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, 법원행정처 차장, 대검찰청 차장검사, 경찰청 차장,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한다.

시스템을 소관하는 국방부(국방부차관)도 협의회 구성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- 참고로, 2010년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이 제정될 당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법원, 법무부, 검찰청, 경찰청 등 4개 기관만 규정하고 있었으나, 2014년 및 2021년 동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⁸⁾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⁹⁾가 추가된 사례가 있음.
- 대법원은 국방부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되면, 국방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 작성의무, 전자적 유통 및 송달의무 등을 부담하므로, 시스템 개발 및 타 기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.
- 국방부는 현재 ‘군사법정보시스템’ 구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본 시스템이 완성되는 2026년 1월 31일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7)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12조(협의회의 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·조정한다.

1.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
2.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
3.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
4. 공통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 형사사법포털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공통시스템의 대상, 범위, 변경,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
7.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변경,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②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.

8) 법률 제12424호, 2014. 3. 18. 일부개정

9) 법률 제18653호, 2021. 12. 28. 일부개정

문 의 처

02)6788-5065

□ 개 요

군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 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, 법원, 검찰, 경찰 등 군외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임

□ 추진배경

- (군사법개혁 / 민간 연동) '21. 9.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특히 3대 범죄 민간 이관 및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관에 따라 民-軍사법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의 중요성 증대
- (군사법기관 업무통합체계 구축 필요) 군사법기관별로 자체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 중이나, 기관 간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수기 형식의 업무수행 중인바, 군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차 (군사경찰, 방첩사), 2차 수사기관(군검찰), 군사법원이 각 기관별 데이터를 연동하고, 사건정보의 위·변조 방지 기술, 대국민서비스 기능 등 원활한 형사절차 진행을 위한 기능을 탑재하며, 향후 민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과의 연동을 위한 '차세대군사법정보시스템' 구축 필요

□ 추진경과

- 군사법정보시스템 BPR('19. 12. ~ '20. 6.)
-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('20. 9. ~ '21. 4.)
- 본 사업 진행('22. 4. ~ '26. 1.)

10) 자료: 국방부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TF

- 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TF조직 신설
- 내·외부 연동 대상 체계에 대한 연동 합의 진행
- 시스템구축 사업기간 : '23. 12. ~ '26. 1.(26개월)

□ 체계개발 추진내용

○ 1.5세대 수준의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

	1.0세대	1.5세대	2.0세대
문 서 작 성 및 유 통 단 계	종이문서 기반	종이 + 전자문서 혼용	전면 전자화
	☞ 문서작성 및 유통 - 전자문서 작성, 종이문서 유통	☞ 문서작성 및 유통 - 전자문서 작성, - 종이문서 + 전자문서(XML,HWP,PDF) 유통	☞ 문서작성 및 유통 - 전자문서 작성 및 유통(XML,HWP,PDF)

- 2세대 수준의 완전전자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및 추가 예산확보 필요
- 예산 범위내에서 적용 가능한 신기술 적용(전자결재 및 서식관리, 권한관리, 블록체인, 타임스탬프, 전자서명 등)
- 내·외부 기관과의 연동을 고려하여 한글기안기를 이용한 문서 작성 및 PDF 형식의 문서보관, 문서유통
- 내·외부 연동 시 XML 및 PDF문서 자료를 함께 제공

○ 시스템 구성방안

- 군 형사사법업무기관(군사경찰, 방첩사, 군검찰, 군사법원, 국군교도소) 등 군사법업무를 수행하는 각 군, 기관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내·외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구축

□ 추진일정

사업단계	분석	설계	구현 및 테스트	시험평가	인도 (전력화/안정화)
기간	5개월	5개월	10개월	3개월	3개월
	'23. 12. ~ '24. 4.	'24. 5. ~ 9.	'24. 10. ~ '25. 7.	'25. 8. ~ 10.	'25. 11. ~ '26. 1.

<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용 개념 >

